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 약관

목 차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2
제2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제3조(보험료) 2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2
제5조(청약의 철회) 2
제6조(보상하는 손해) 3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제8조(보험계약의 유지) 5
제9조(손해의 통지) 5
제10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5
제11조(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 6
제12조(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 ... 6
제13조(보상의 결정 및 범위) 7
제14조(보상 한도) 7
제15조(보험가입금액의 감소 및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 ... 7
제16조(보험금의 지급) 7
제17조(지급 또는 합의시의 대위권) 8
제18조(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한정된 책임 및 전체계약) 8
제1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8
제20조(통지) 8
제21조(소멸시효) 8
제22조(분쟁의 조정) 8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9
제24조(관할법원) 9
제25조(약관의 해석) 9
제2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9
제2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9
제28조(준거법) 9
제29조(용어의 정의) 9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11
제2조 (보험료의 영수) 11
제3조 (사고카드 계약) 11
제4조 (준용규정) 11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예치보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권리조사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①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부터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 이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등(이중매매 제외)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보장은 종료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조사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의 권원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 된 손실 또는 손해
   - 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그 신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다.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라. 매도인이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목적부동산을 취득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마. 매도인이 의사무능력자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바. 매도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 무능력자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사.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아.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자. 회사, 조합, 신탁, 기타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수권 없이 이루어지는 권원의 이전 또는 양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2.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3.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 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4. 목적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원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변호사, 법무사등 등기대행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피보험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등기업무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②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이 약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2.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3.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 규제 또는 금지하는 법률(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함)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사항
   - 나. 목적 부동산 중 기존의 정착물 또는 장래에 설치될 정착물의 특성, 면적, 위치에 대한 사항
   - 다. 소유권의 대상인 목적 부동산의 분할, 목적 부동산의 면적 변경, 목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과거에 포함되었던 필지의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
   - 라.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4. 제3호와 같은 법률의 위반에 따른 효과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5. 제3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정부 또는 행정당국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6.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목적 부동산의 수용, 환매, 몰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7. 보험개시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불리한 청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으로서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보험금 청구인이 설정, 부담, 인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합의한 권리제한

나. 회사는 당해 권리제한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나, 보험금 청구인은 그러한 권리제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금 청구인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일자 이전에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
다. 보험금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제한
라. 보험금 청구인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부동산 또는 권리에 대한 가액을 지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였을 권리제한

8. 파산, 화의, 회사정리,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9.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수권, 용수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와 관련된 손실이나 손해
10. 산림, 광물,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 등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1. 제3자가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및 손해
12. 이 약관 제22조(분쟁의 조정), 제24조(관할법원), 제25조(약관의 해석) 및 제28조(준거법)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기타 쟁송기관에 제기된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집행에 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3. 전쟁, 반란, 폭동, 사회불안, 적군의 행위, 전염병, 격리조치,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또는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이와 유사한 사유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4. 통일에 의해 야기되는 소유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② 아래 각 호의 손실 및 손해는 이 약관의 부보 범위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경비,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과세당국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으로서 보험개시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목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 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실, 권리, 또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권, 지역권, 부담 및 기타 사항으로써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측량조사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불일치, 경계선의 상충, 면적의 부족, 부동산에 대한 침범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공적기록에 등록되지 아니하나 법률상 이미 부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장차 부여, 부과될 용역, 노무 또는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6. 목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7.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청구로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아래 '가' 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간석지, 침수지, 강, 호수, 시내 및 개울 등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는 수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러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나. 충적, 침식, 분리 등 기타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한 수로 또는 해안의 변경을 사유로 한 권리 또는 이익
   다. 해안이나 수중에서의 어획, 수영, 수렵 및 여타의 사용목적을 위한 상속권, 하천부지 소유자의 권리 및 용수권 관련 권리 기타 법적인 권리 또는 이익
   라. 섬, 부두, 방파제 및 항구 기타 목적을 위한 매립지와 관련한 권리 또는 이익
8.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③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추가하여,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의 유지)

① 소유권이 양도 기타 이전되는 경우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부보범위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매매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유효합니다.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피보험자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거나 매매대금에 관한 저당권부 채권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유권 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을 말합니다.

제9조(손해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즉시 또는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제①항에 기재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사에 즉시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모든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0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3자가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제기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방어해 드립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대리할 변호사 선임권을 가지되, 회사가 선임하지 아니한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부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수수료, 비용, 경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또한 회사가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수료, 비용, 경비에 대하여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소유권을 입증하거나 손실 및 손해를 방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소송 제기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는 이 약관상 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약관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 합니다.

④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불리한 유권해석, 판결, 법령, 명령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불복할 권리도 갖습니다.

⑤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소송 제기, 방어 및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보장하며 회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의 명의사용을 허용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1.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증거, 증인의 확보, 소송 제기 및 방어,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리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그러한 협력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11조(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

① 제9조(손해의 통지)에 따라 회사에 대한 통지를 한 후, 보험금 청구인은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이 서명하고 확인한 당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본 조 제①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보험금 청구인은 이 약관에서 부보하는 하자, 제한 기타 사항들 중에서 손실 또는 손해의 근거가 되는 사항과 손실액 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금 청구인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④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회사 수임인의 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그 작성일이 보험개시일자 이전 또는 이후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반 증빙자료를 회사의 수임인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 검토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위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의 수임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그 작성일이 보험개시일자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서 제3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상기 본 조 제④항의 제반 증빙자료를 조사,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⑥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기밀 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가 보험금 청구 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조사에 불응,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미제공 및 거부, 제3자로부터의 정보 획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 또는 합의에 대한 선택권 및 책임의 소멸)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아래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소멸됩니다.

1. 보험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제공의 경우
   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제공과 함께 회사가 승인한 제반비용을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지급 또는 지급의무이행의 제공 시까지 부담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합니다.
   나. 위 가.목에서 규정한 지급의무를 제외하고,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멸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회사에 양도되어 말소됩니다.
2. 피보험자를 제외한 당사자 또는 보험금 청구인에 대한 지급 또는 그들과의 합의
   가. 보험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또는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로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보상되는 청구금과 회사의 지급시까지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나. 이 약관에 규정된 손실이나 손해를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지급 시까지 부담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비용과 함께 보험금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다. 회사가 위의 '가'목 또는 '나'목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지급을 할 의무를 제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소송이나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진행할 의무를 비롯하여 청구 받은 손실이나 손해에 관한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종료합니다.

제13조(보상의 결정 및 범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이 약관에 부보된 사항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보험금 청구인의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며, 그 보상범위는 이 약관에 기재된 바에 한정됩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회사의 책임은 아래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나. 피보험 부동산 또는 권리의 가액과 이 약관에 의해 부보된 하자, 부담, 권리 또는 담보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피보험 부동산 또는 권리의 가액간의 차액
2. 회사는 이 약관 제10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에 따라 발생된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상 한도)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소유권이 확실하게 취득되도록 하는 경우
2. 주장된 하자, 제한, 부담, 권리 또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3. 합리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소송이나 기타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②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부보된 소유권에 불리한, 관할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에 관련한 모든 불복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청구 또는 소송의 해결을 위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인수한 채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가입금액의 감소 및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의해 지급된 모든 지급액만큼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감액됩니다.

제16조(보험금의 지급)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가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은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은 회사가 수용할만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② 손실 또는 손해의 책임 및 범위가 이 약관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확정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에 의한 지급이 지체되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지급 또는 합의시의 대위권)

① 회사의 대위권

1.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청구에 대해 합의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대위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권리는 보험금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청구인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로 소송, 화해 또는 합의하고, 이러한 권리 또는 구제 수단과 관련된 모든 거래,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보험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는 피보험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약정, 보증이나 다른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권리가 포함되며, 다른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 기타 관련 문서가 회사의 대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8조(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한정된 책임 및 전체계약)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와 회사가 첨부한 모든 배서조항 및 특약은 피보험자와 회사간의 전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계약을 구성합니다. 앞에 사항 이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는 이 약관상의 내용으로 대체되며 더 이상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전체로서 해석됩니다.

② 이 약관 규정의 모든 변경, 개정 또는 수정은 이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첨부된 배서조항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지점장 기타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③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수시로 첨부되는 각 배서조항 및 특약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일부가 되며,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배서조항 및 특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또는 모든 배서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개시일자 또는 모든 배서조항의 개시일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합니다.

④ 귀책사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손실 및 손해의 청구는 이 약관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⑤ 이 약관의 어느 규정이 관계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불능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 약관은 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다른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0조(통지)

회사에 발송 및 제공되어야 할 모든 통지 및 서면은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회사의 보험금 청구 담당 부서를 참조인으로 하여 회사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분쟁의 조정)

이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금융감독원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제29조(용어의 정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래 각 호의 의미를 갖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 금액을 말합니다.
2. '보험개시일자'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자를 말합니다.
3. '목적 부동산'이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법률상 부동산을 말합니다. 다만, 목적부동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경계선 밖의 부동산 및 인접하는 거리, 도로, 수로에 대한 권리, 다른 소유권이나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속된 건물, 설치물 및 기타 정착물중 법률상 부동산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성명이 기재된 당사자 및 그 상속인, 수증자, 유족, 대리인 또는 법적 승계인을 비롯하여 법률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하며, 기명된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도 회사가 기명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나 항변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보험금 청구인'이란 손실 또는 손해를 청구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7. '알고 있는'이란 약관에 정의된 공적기록 또는 목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려주는 여타 등록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8. '목적 부동산'이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목적 부동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경계선 밖의 부동산 및 인접하는 거리, 도로, 수로에 대한 권리, 다른 소유권이나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법률'이란 법률과 명령, 규칙, 규정, 고시 등 그 하위 법령 및 정부의 규제를 말합니다.
10. '저당권'이란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기타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11. '공적기록'이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기부, 건축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건축물대장 및 지적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법에 의해 관리되는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말합니다.
12. '등록'이란 등기부 및 대장에 등기 또는 등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13. '소유권'이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 화	지역번호 없이 1566-7535
	서 면	우)110-717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10층
	인터넷	www.educar.co.kr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정보(주)/서울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 6670-8032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11층	02) 3702-8679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 6층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민원센터